

재가노인복지시설(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9-111
----------	--------

제출년월일 : 2019년 9월 일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노인성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을 위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 시설(데이케어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목적

- 1)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내실있는 생활 밀착형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이용대상 노인 및 보호자 만족도 제고
- 2) 데이케어센터 운영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나. 민간위탁의 내용

- 1) 위탁기간: 5년
- 2) 위탁운영 시설현황
 - 시설명 : 아현데이케어센터(가칭)
 - 위 치 : 마포구 마포대로11길 44-81(아현문화건강센터 지하1층 지역커뮤니티센터)
 - 면 적 : 317.25m²
- 3) 위탁사무 범위 :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4)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5) 수탁기관 선정주체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별도구성)

다. 추진일정

- 1) 공개모집 공고 : 2019. 9. 30.
- 2) 신청서 접수 : 2019. 10. 15 ~ 10. 22.
- 3) 선정 심사 : 2019. 10. 30 ~ 11. 6. (기간 중 1일)
- 4) 심사결과 발표 : 2019. 11. 8.
- 5) 협약 체결 : 2019. 11. 20.
- 6) 위탁 운영 : 2019. 12. 1 ~ 2024. 11. 30. (5년)

라. 소요예산

- 1) 시설설치비(내부리모델링공사 등) : 270,000천원(사비 100,000천원, 구비 170,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